

보도자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병역거부 구제조치 권고에 따른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5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평화박물관 (종로구 견지동, 종각역 3-1번 출구 직진 전북한지골목)
- 문의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여옥 (전쟁없는세상, 010-5183-0036) / 최정민 (연대회의, 017-311-4245)

1. 안녕하세요.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02년 2월 소수자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신장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36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3. 지난 4월 15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의민, 오탉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운, 최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 씨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 4일 최명진, 윤여범 씨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에의 권고 이후 두 번째 내려진 것입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전 결정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해주는 것이 국가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으며, 따라서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을 입증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결론적으로, 한국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1항을 위반하였고 개인통보를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에게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와 같은 위원회의 견해를 실행할 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180일 내로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4. 지난 정부에서 2009년 실시기로 약속한 사회복무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 그 추진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난 2008년 12월 24일 병무청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중 극히 일부인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의 도입을 무기한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병역거부 수감자 숫자는 계속 늘어나 3월 말 현재 8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감옥에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국민적 공감대 평계를 대며 대책을 마련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이에 연대회의는 이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결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힐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6.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병역거부 구제조치 권고에 따른 기자회견

1.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내용 설명 및 의의
: 개인통보 법률대리인 오재창 변호사 (민변, 법무법인 해마루)
2. 유엔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노력
: 이석태 변호사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민변, 법무법인 덕수)
3. 사회복무제도 도입 약속이 백지화 되고 그 이후
: 한홍구 교수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성공회대)
4. 개인통보 결정 당사자들의 발언 및 이후 일정
5. 질의응답

<자료 순서>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개인통보제도 소개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유엔의 입장
3. 연대회의 성명서 -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라
4. 면담요청서(국회의장,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병역거부자 11명에 대한 개인청원 결정문(한글번역)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개인청원 제도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전 세계 160개국이 가입해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1976년에 설치되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규약 당사국들에 의해 선출된 18명의 인권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중 세 차례 제네바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갖는다.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 당사국 이행보고서 검토(5년마다 제출) 및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권고 △ 규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s) 제공 △ 개인청원(Individual Complaint/Communication) 심리 및 결정(View)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종종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와 혼동되는데,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존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대체하여 신설되었으며, 유엔 총회의 산하기구로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아니라 유엔 헌장에 따라 설립되었고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보고관 등의 제도를 통해 전 세계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결의를 채택한다.

2) 개인청원제도(Individual Complaint/Communication)

개인통보제도는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의 이행감시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직접 통보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도이다. 개인통보제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에 가입한 국가에 한하여 적용된다. 개인통보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건이어야 한다. 개인통보가 접수되면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선 통보의 적격성(Admissibility) 여부를 심사한 후 관련 당사국에 통보사건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출을 요구한다. 관련 당사국은 통보사건에 대해 취하여진 국내 구제조치, 통보의 심리적적격과 본안문제에 관하여 6개월 이내에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은 해당 당사국의 진술에 대해 추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피해자와 관련당사국이 제출한 모든 서면정보를 종합하여 규약 상의 권리침해 여부와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들을 결정하여 당사국에 통지한다.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리지만, 사안의 긴급성과 심각성에 따라 피해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최종결정 이전이라도 관련당사국에 잠정조치(Interim Measures)를 취할 것을 통지하기도 한다.

3) 한국의 자유권규약위원회 개인청원 사례

2008년까지 한국정부를 상대로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개인통보가 제기된 사건은 지금까지 12건으로 이중 10건에 대해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8건에서 한국정부가 규약을 위반하였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이번에 개인통보 결정이 내려진 11건 외에도 488명의 병역거부 사례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규약 위반 사건들의 간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손종규(1995, Communication No. 518/1992) 노동쟁의조정법 상의 제3자 개입금지 사건
- 박태훈(1998, Communication No. 628/1995) 국가보안법 7조 (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이적단체 구성)

- 김근태(1999, Communication No. 574/1994) 국가보안법 7조 (반국가단체 고무, 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유포)
- 강용주(2003, Communication No. 878/1999) 사상전향, 준법서약제 등
- 신학철(2004, Communication No. 926/2000)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제작)
- 이정은(2005, Communication No. 1119/2002) 국가보안법 7조 (이적단체 구성, 찬양, 고무)
- 최명진·윤여범(2006, Communication No. 1321/2004, 1322/2004) 병역법 88조 (병역거부)

4) 자유권규약위원회 결정의 효력 및 국내적 이행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로는 당사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정당성과 객관성, 설득력을 갖추어 왔기 때문에 그 결정 내용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당사국은 선택의정서 가입을 통하여 개인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권한을 인정하였고 규약상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은 당사국에 대하여 간접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91년 9월 유엔회원국이 되었으므로, 유엔헌장 및 자유권규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보호에 관한 각종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대부분 국제관습법의 확인적 성격을 갖는 세계인권선언과 일반적인 유엔의 인권관련 결의를 존중하여야 한다.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국제법 질서준중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 4월 자유권규약에 가입하였으므로, 자유권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자유권규약에 따라 조약이행기구로 만들어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권고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2월 유엔인권협약에 따른 개인통보제도의 결정을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결정을 이행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2008년 7월에는 "2006년에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권고했고 지난 5월 유엔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심의에서도 같은 권고가 되풀이됐다"며 "국방부의 추진방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법상의 병역기피죄로 처벌됨으로써 다시 연간 500~800여 명의 전과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유엔의 입장

-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1987년, 1989년, 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원국들에게 병역거부권 인정을 권고하였다.
-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1991년 이래 병역거부권이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1993년 채택한 [일반논평22호]에서 병역거부권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자유권규약 18조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 2006년 11월에는 [자유권규약 40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최종견해]에서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입법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 2007년 1월에는 개인통보제도에 진정한 2명의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이들의 처벌은 자유권규약 18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 결정하고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를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 2008년 유엔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심의에서 총회에 제출한 [대한민국에 대한 정례검토 보고서]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양심적 거부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과,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 것과, 그들의 공직 취임 및 공공기관 취직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참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22호 (1993년 채택) 中

11. 많은 개인들이 병역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병역거부권)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명시된 자유권에 기초를 둔 것이다. 이것에 답하여, 병역수행 혹은 국가대체복무를 금지하고 있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강제적 병역 수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기하는 국가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규약은 병역거부권에 관하여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러한 권리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8조에서 기인한 것임을 믿는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해야 하는 명령은 양심의 자유 및 개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와 심각하게 상충한다. 이러한 권리가 법 또는 관행으로 인정되고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신념의 특징을 기준으로 병역거부자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병역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명시된 권리들에 의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의 상황 및 대체복무의 특징과 기간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당사국을 회의에 참석시킨다.

<참조> 1998년 4월 22일 유엔인권위 77호 결의안 中

- 1995년 유엔인권위 결의안 등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된 사실을 상기해야 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는 양심에 기초한 이성과 원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 병역 복무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며,
- 세계인권선언 14조에 따라 모든 사람이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따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야 할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 관심을 촉구하며,
-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들이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독립적이고 편견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을 촉구하며,
- 각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해 거부자가 투옥이나 반복된 징계를 받지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 각국은 병역거부로 인한 박해를 피해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에게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취하도록 권장하며,
- 병역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절차에 관한 정보가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결의안이 각국 정부, 유엔 전문 기관, 관련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조직에게 전달되도록 조치하기를 요청하며,
- 차기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의제를 계속 심의할 것을 결정한다. (1998년 4월 22일)
-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보호를 신청할 권리
- 비보복적 성격의 대체 복무를 선택할 권리
- 복무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수 있는 권리

<참조> 유엔인권위원회, 종교와 신념에 관한 특별보고관(Mr. Abdelfattah Amor) 보고서 (2003년 1월) 中

6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며, 양심의 자유는 국방의 의무를 위한 타당한 제한이라는 한국정부의 답변에 대하여) 종교와 신념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22호에 따르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며, 살상무기를 들도록 강요하는 의무는 양심의 자유 및 종교, 신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참조>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2004/35) 시민적·정치적 권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유엔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생명과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어 있음을 명심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본 인권위원회의 과거 결의 사항들, 특히, 모든 사람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

조,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22호에 규정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1998/77호 결의(1998.4.22.)의 내용을 상기하며,

1.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모범사례를 편찬, 분석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보고서(E/CN.4/2004/55)에 주목한다.
2.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 준 정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3. 아직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자국의 현행 법률과 관행들을 본 인권위원회의 1998/77호 결의에 비추어 재검토하지 않은 국가들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그 작업을 수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4.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사면·복권 등을 제공하고 그러한 조치가 법률과 관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전후 평화건설 과정에 있는 국가들에게 권장한다.
5. 모든 적절한 출처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모범사례에 관한 보충적 정보를 담은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요청한다.

3. 연대회의 성명서

한국 정부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라

지난 4월 15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동주·나동혁·오태양·유호근·염창근·임성환·임재성·임치운·임태훈·정의민·최진 씨(대리인 오재창 변호사)가 2007년 5월 15일에 개인청원한 사건에 대해 결정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이들 11명이 한국 정부로부터 인권 침해 피해를 받았음을 인정한다고 결정했으며 한국 정부에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한국의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6년 12월 4일 최명진·윤여범 씨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 이후 두 번째로 내려진 것이다. 이전 결정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해 내지 못했으며, 따라서 권리 제한의 타당성으로 입증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1항을 위반, 개인통보를 신청한 이들 11명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에 앞으로 이와 같은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을 실행할 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180일 내로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에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살상 무기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의무는 어떤 사람의 양심 또는 신념과 심각히 모순되고 이들에 대한 유죄판결과 선고는 양심과 신념을 표현할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제18조 3항에 따라, 모든 제한은 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건강과 윤리 또는 기초적 권리와 타인의 자유를 위해 가능하지만 이 제한도 권리의 본질을 손상시킬 수 없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강제 징병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대체복무로 인해 해당 국가에 어떠한 특정 손실이 있었는지 보이지 못했음을 주목하며, 징병제 내에 대체복무를 마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리고 관행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사회적 통합과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해당 국가가 양심상의 신념과 양심 실현을 존중하는 것이 단결되고 안정된 다원화 사회의 존속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다시 한국 정부를 지목하여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구로서 국제인권법의 해석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이미 한국은 1990년에 본 규약에 가입했으며 따라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는지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조약 당사국으로서 한국은 규약의 위반 여부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해 결정하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한을 승인했다. 따라서 한국은 관할권의 모든 개인에게 이 규약이 인정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 규약을 위반한 사건에 유효하면서도 이행 가능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사회복무제) 도입을 전면 백지화해 무기한 보류하기까지 했다. 2004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국회에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권고하고 국가인권위가 수차례를 촉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현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 백지화를 위한 전면 재검

토를 언급했던 2008년 7월 이후 사법부에서는 끊임없이 판결로서 대책 마련을 제안했으며 5차례 이상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거듭 내렸다(춘천, 대전, 전주, 수원, 대구). 한 예로 수원지법은 2009년 12월 30일 병역거부자와 관련해 “입법자가 이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입법자는 ... 기본권제한원리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은 헌법에 의해 국제규약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조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 결정은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받았음을 유엔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병역거부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유엔은 20여 년 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제59호, 1989년)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는 점을 천명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채택한 결의들에서 이 점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1998년 77호 결의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자국의 현행 법률과 관행들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는 국가들에 그 작업을 수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보편적 인권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완전히 방기하여 온 것이다.

이번에 또 나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은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를 지목하여 그 책임을 물은 것이므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글로벌 국가 수준’, ‘선진 일류 국가’로 나아가자고 할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는 실제로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라고 떠드는 건 전혀 자량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유엔의 국제규약조차 무시하는 치부만 부각시킬 뿐이다. 연대회의는 한국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국회가 유엔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엔이 권고한 대로 보상을 하고, 아울러 모든 병역거부자를 사면·석방·복권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병역거부권을 받아들이는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이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만 한국 정부는 비로소 국제사회에 평화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을 것이다.

2010. 5. 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기독교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대양 지지도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호근 지지도모임 평화사랑/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한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쟁없는세상/ 좋은벗들/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함께가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4. 면담요청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121-230)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22-9번지 3층
Tel. 02-6401-0514 Fax. 02-6401-0514 E-mail. corights@jinbo.net

문서번호 : 10-0506-2

발 신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수 신 : 김형오 국회의장

참 조 : 국회의장 비서실

제 목 : 연대회의 대표단 면담요청 건

1. 안녕하십니까.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02년 2월 소수자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었던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신장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36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지난 4월 15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 씨 등 11명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 4일 최명진, 윤여범 씨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에의 권고 이후 두 번째 내려진 것입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전 결정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해주는 것이 국가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으며, 따라서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을 입증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결론적으로, 한국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1항을 위반하였고 개인통보를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에게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와 같은 위원회의 견해를 실행할 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180일 내로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 군사와 대체복무제의 평등,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부재에 대해 더욱 심화된 논거들을 되풀이했으나 이전에 여러 차례 되풀이 했던 유엔권고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부분을 찾지 못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는 지난 2001년 초부터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1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역거부로 감옥에 가야 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차별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의 존재와 지난 10년 간 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2007년 9월엔 사회복무제 도입이 현실화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적 합의를 핑계로 사실상 이의 시행을 백지화시킨 상황입니다. 이후 사회복무제로 병역을 대체할 것을 기대했던 병역거부자들

이 대거 감옥으로 향했고 현재 전국의 감옥에 수감된 병역거부자의 수는 3월 말 현재 82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5. 이에 연대회의는 국회의장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현재 상황, 연대회의의 입장을 전달하고 청와대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6. 답변은 2주일 이내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면담에 참가할 연대회의 구성원은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이석태(민변 전 회장), 한홍구(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입니다. 면담 참석자는 가능한 일정에 따라 약간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7. 감사합니다.

④ 문의 : 최정민 (연대회의, 017-311-4245)

면담요청서

(110-872)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경희궁의아침 3단지 328호 전화: 070-8162-5119 전송: 02-733-7119
E-mail: outpride@gmail.com 휴대전화: 010-7649-3669 담당: 임태훈

시행일자 : 2010.5.6

수 신 : 대통령실 정무수석

참 조 : 시민사회비서관

제 목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권고 관련

선람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권고 관련 면담요청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4월 15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 씨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 4일 최명진, 윤여범 씨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에의 권고 이후 두 번째 내려진 것입니다.

3.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전 결정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해주는 것이 국가안보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으며, 따라서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 또한 입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결론적으로, 한국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1항을 위반하였고 개인통보를 신청한 신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에게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와 같은 위원회의 견해를 실행할 방법들에 관한 정보를 180일 내로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4. 이에 이번 권고 결정을 받은 당사자 11명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조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국내적 권리구제 및 대체복무입법 추진 등과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면담에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고동주, 나동혁, 염창근, 오태양, 유호근, 임성환, 임재성, 임치윤, 임태훈, 정의민, 최진

제네바 UN(국제연합) 사무국
UN 인권고등판무관

전화: +41 (0)22 917 09 00
팩스: +41 (0)22 917 90 22
이메일: tb-petitions@ohchr.org
홈페이지: www.ohchr.org



UN 제네바 사무소(UNOG)
CH-1211 제네바 10

사건번호: G/SO 215/51 KOR(13-23)
CR/sn 1593-1603/2007

2010년 4월 15일

오재창 귀하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청원사건 번호 1593-1603/2007와 관련해 2010년 3월 23일 채택한 결정문을 전달해 드립니다. 위 청원사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아래 명명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사건번호

1593/2007 정의민	1599/2007 최진
1594/2007 오탔양	1600/2007 임태훈
1595/2007 염창근	1601/2007 임성환
1596/2007 나동혁	1602/2007 임재성
1597/2007 유호근	1603/2007 고동주
1598/2007 임치윤	

관례에 따라 본 결정문은 일반에 공개됩니다.

유엔 인권조약국장
서명

오재창
해마루 법률사무소
대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4-10 김영빌딩 8층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배포 제한*

2010년 4월 14일

원문: 영어

자유권위원회

제98차 회기

2010년 3월 8일 - 26일

결 정

청원 사건 번호 1593 - 1603/2007

청원인 : 정의민, 오탉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
(대리인 해마루 법률사무소 오재창 변호사)

피해자 : 청원인들

당사국 : 대한민국

통보일 : 2007년 5월 15일(최초제출)

관련문헌 : 2007년 10월 5일 특별보고관의 규칙 제97조에 의한 결정을
대한민국에 보냄 (문서형태로는 미배포)

결정일 : 2010년 3월 23일

* 자유권규약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함

본 안 :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문제

절차문제 : 없음

쟁 점 : 신념, 양심, 종교를 실현할 자유

관련규약 규정 : 제18조 1항

선택의정서 관련 규정 : 없음

2010년 3월 23일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청원 사건 번호 1593부터 1603/2007까지에 대하여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라 별지와 같은 결정을 채택하였다.

[별 지]

별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자유권규약위원회 결정 (제98차 회기)**

관련 사건

청원 사건 번호 1593부터 1603/2007 **

청원인 :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 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 (대리인 해마루 법률사무소 오재창 변호사)
피해자 : 청원인들
당사국 : 대한민국
통보일 : 2007년 5월 15일(최초제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0년 3월 23일에 열린 심의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를 대리해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된 청원 사건 번호 1593부터 1603/2007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청원 사건 당사자들과 당사국이 제출한 모든 문서 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선택의정서 제5조 4항에 따른 결정

1.1 본 사건 청원자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적으로, 정의민(청원사건 번호 1593/2007), 오태양(청원사건 번호 1594/2007), 염창근(청원사건 번호 1595/2007), 나동혁(청원사건 번호 1596/2007), 유호근(청원사건 번호 1597/2007), 임치윤(청원사건 번호 1598/2007), 최진(청원사건 번호 1599/2007), 임태훈(청원사건 번호 1600/2007), 임성환(청원사건 번호 1601/2007), 임재성(청원사건 번호 1602/2007), 고동주(청원사건 번호 1603/2007)씨이다. 청원인들은 대한민국에 의해 인권규약 제18조 1항에 위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해마루 법률사무소 변호사 오재창이 청원인들을 대리하였다.

** 아래의 위원들이 본 청원사건 심의시 참석하였다: Mr. Abdelfattah Amor, Mr. Lazhari Bouzid, Ms. Christine Chanet, Mr. Mahjoub El Haiba, Mr. Ahmad Amin Fathalla, Mr. Yuji Iwasawa, Ms. Helen Keller, Mr. Rajsoomer Lallah, Ms. Iulia Antoanella Motoc, Mr. Michael O'Flaherty, Mr. Jose Luis Perez Sanchez-Cerro, Mr. Rafael Rivas Posada, Sir Nigel Rodley, Mr. Fabian Salvioli, Mr. Krister Thelin and Mrs. Ruth Wedgwood.

1.2 2010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의 절차규칙 제94조 2항에 따라 이 사건 11건의 청원들이 사실과 법률의 면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병합하여 심의한다.

청원인들이 제출한 사실 관계

정의민의 경우

2.1 날짜 미상의 어느 날 당사국 병무청은 정씨에게 입영통지서를 송부했다. 종교적인 신념과 양심에 따라, 그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입영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 병역법 제88조(제1항)¹⁾에 따라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2005년 9월 1일 그는 서울 북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2 2005년 11월 25일, 대법원은 아래의 요지와 같은 이유로 정씨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헌법 제 39조 제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국민들은 주권과 함께 헌법상 국방과 병역의 의무를 지니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정당한 것이다. [...] 또한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18조는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와 제 20조 종교의 자유에서와 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법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권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18조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오태양의 경우

2.3 오씨는 불교신자이다. 날짜 미상의 어느 날 당사국 병무청은 오씨에게 입영통지서를 송부했다. 종교적인 신념과 양심에 따라, 그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입영을 거부하였고 그 결과 병역법 제 88조(제1항)에 따라 체포되고 기소되었다. 그는 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004년 7월 15일,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양심의 자유는 국가에게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것은, 법적인 의무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염창근

2.4 날짜 미상의 어느 날, 병무청은 염씨에게 입영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에 근거하여, 그는 제시된 날짜의 입영을 거부하였고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검찰의 기소를 거쳐 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상소는 기각되었고 2004년 11월 12일, 대법원은 이 판결을 인정하며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시하였다.

1) 병역법 제88조는 아래와 같다: "입영의 기피" (1)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5일 [....]"

나동혁

2.5 날짜 미상의 어느 날, 병무청은 나씨에게 입영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에 따라, 그는 제시된 날짜의 입영을 거부하였고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검찰의 기소에 이어 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상소는 기각되었고 2004년 11월 12일, 대법원은 이 판결을 인정하며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시하였다.

유호근

2.6 날짜 미상의 어느 날, 병무청은 유씨에게 입영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에 근거하여, 그는 제시된 날짜의 입영을 거부하였고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검찰의 기소를 거쳐 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상소는 기각되었고 2005년 6월 24일, 대법원은 이 판결을 인정하며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시하였다.

임치윤

2.7 날짜 미상의 어느 날, 병무청은 임씨에게 입영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에 따라, 그는 제시된 날짜의 입영을 거부하였고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검찰의 기소를 거쳐 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고, 상고는 기각되었다. 2005년 1월 13일, 대법원은 이 판결을 인정하며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시하면서 또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형사처벌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종교적이고, 양심에서 우러나온 결정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에게 군복무를 대체할 다른 의무를 찾아주는 것이 병역의무를 강조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지라도, 이러한 입법은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예외 조항 없이 처벌만을 명시하고 있는 현 병역법은 헌법적 권리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진

2.8 날짜 미상의 어느 날, 병무청은 최씨에게 입영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에 근거하여, 그는 제시된 날짜의 입영을 거부하였고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검찰의 기소에 이어 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2005년 9월 15일, 대법원은 이 판결을 인정하며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시하였다.

임태훈

2.9 날짜 미상의 어느 날, 병무청은 임씨에게 입영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에 근거하여, 그는 제시된 날짜의 입영을 거부하였고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검찰의 기소에 이어 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2004년 11월 24일, 대법원은 이 판결을 인정하며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시하였다.

임성환

2.10 날짜 미상의 어느 날, 병무청은 임씨에게 입영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에 근거하여, 그는 제시된 날짜의 입영을 거부하였고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검찰의 기소 이후, 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고, 상고는 기각되었다. 2005년 1월 13일, 대법원은 이 판결을 인정하며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시하면서 또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현재 법 체제에서, 피고와 같이 자신의 종교적이고 양심에서 나온 결정을 굳게 지키려는 이들에게 군복무 대신 수감을 강요하기보다 의무 병역을 대체할 만한 봉사에 대한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임재성

2.11 날짜 미상의 어느 날, 병무청은 임씨에게 입영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에 근거하여, 그는 제시된 날짜의 입영을 거부하였고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검찰의 기소를 거쳐 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2005년 7월 28일, 대법원은 이 판결을 인정하며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시하였다.

고동주

2.12 고동주 씨는 카톨릭 신자이며 또한 평화주의에 헌신하고 있다. 날짜 미상의 어느 날, 병무청은 고씨에게 입영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에 근거하여 그는 제시된 날짜의 입영을 거부하였고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검찰의 기소 이후 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2006년 12월 7일, 대법원은 이 판결을 인정하며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판시하였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

2.13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26일, 현행 청원들과 관련이 없는 재판에서 병역법 제88조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양심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위헌 제청에 대해 다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소의 결정 이유는 특히 다음과 같다.

"헌법 19조에 명시되어있는 양심의 자유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개인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게 개인의 양심을 가능한 한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심적 이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이행을 대신하는 대체 의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 복무 방안을 요구할 권리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헌법은 병역의 의무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의 일방적인 우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범적 표현도 하고 있지 않다.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²⁾

2.14 청원인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매년 약 700명 가량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유죄선고를 받고 1년 반 동안 수감된다고 서술했다. 병역거부자의 99% 이상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2) 따라서 논쟁이 된 조항의 합헌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재판관 다수는 국가안보에 관한 공공의 이해와 양심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부가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본 위원회의 22호 총평(General Comment No.22), 자유권 규약 18조에 대한 당사국의 고려 부재, (당시) 인권 및 국가관행에 관한 유엔 위원회의 결의안들에 기초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이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입법부의 노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병역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청원 제기

3.1 청원인들은 형사 소추와 구금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가운데 징병제에 대한 당사국의 강제 군복무제도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은 규약의 제18조 제1항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원한다.

3.2 청원인들은 윤여범과 최명진 대(vs.) 대한민국 사건에 관해 위원회가 내린 1321/2004와 1322/2004 각 결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2006년 11월 3일 채택된 결정에서는 현행 청원들과 유사한 사실에 기초해 당사국이 규약의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당사국이 청원인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사국의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견해

4.1 당사국은 2008년 11월 14일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본건 청원의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 윤여범과 최명진 사건³⁾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언급하면서 위원회가 당사국의 안보환경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4.2 당사국은 위원회의 종전 결정의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제군복무를 보유하고 있는 규약 당사국들 가운데 강제군복무제도에 대한 대안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관해서, 당사국은 그러한 대안을 도입한 국가들인 독일과 대만의 법 체계는 당사국의 법 체계와 아주 상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사국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전쟁이 없었고 1990년 통일을 이룩했다는 것이다.

4.3 대만은 1955년 대만 정부가 수립된 이후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 한반도 전역에서 치러진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까지 3년 1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남한측 사망자만 해도 백만 명에 이르렀으며, 전쟁이 끝날 무렵엔 천만 명 이상이 가족과 헤어졌다. 당사국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역사가 바로 정부가 국가 안보를 자국의 국가 정책의제 가운데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진술하고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사국은 정전협정이 당사국 내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이런 점에서 대만 같은 나라들과 자국의 상황은 다르다고 말한다. 이 정전협정은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전선언 또는 불가침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협정 같은 새로운 법적 틀로 대체되지 못하고 있다. 당사국의 관점에서 볼 때, 155마일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자국의 안보 환경은 독일이나 대만의 안보환경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1999년 6월 15일과 2002년 6월 19일 발생한 사건과 같이 북한과 남한 선박 사이에는 수많은 충돌이 벌어져왔다. 따라서, 이는 양국 간에 비교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에서도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여전함을 보여주었고, 방어 목적을 위한 군사적 수단을 확립할 당사국의 필요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4.4 "대한민국은 규약 제18조에 의거한 청원인들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될 경우 어떤 특별한 불이익이 수반되는지 밝히지 못하였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대하여,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자유를 위한 대전제인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

3) 상계문

관되어 있다고 진술한다. 당사국은 대체복무제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을 우려한다. 당사국은 한반도의 70%가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게릴라전에 대항할 충분한 지상 병력으로 무장할 것이 한결 더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당사국의 군인 수는 약 680,000명으로서 약 1,170,000명인 북한의 58%밖에 되지 않는 숫자다. 또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15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 군인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징집에 있어 예외 사례를 인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4.5 당사국에 의하면, 군대에서 종종 요구되는 상대적으로 힘겨운 상황이나 학문 혹은 직업상의 이력 중단이 가져올 여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징집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다. 그러므로 충분한 지상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현행의 예외 없는 강제군복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당사국은 만약 공중의 합의 없이 군 복무 면제에 대한 주장을 수용한다면 이로 인하여 현행 징병제도 체계의 공정성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약화될 것이고, 그럴 경우 공중은 그것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도록 해서 국가 안보를 위한 충분한 병력을 확보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 진술한다. 게다가, 종교적 신념에 의거하여 징병제도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그 예외는 모든 종교적 신념을 지닌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종교적 신념을 지닌 사람들이 군 병력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면제 요구의 확산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국이 종교적 토대가 아닌 개인적 양심에만 의거하여 군 복무 면제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병력 공급,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 간의 그리고 종교를 지니지 않은 이들 간의 형평성, 면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 해당 사안에 대한 일반 공중의 합의와 같은 일련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4.6 “국가 측이 양심에 따른 신념들과 표명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의 통합적이고 안정된 다원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는 위원회의 주장에 대하여, 당사국은 독특한 안보 환경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공평하고 충실한 강제군복무제를 이행하는 것이 사회 통합을 담보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라는 입장이다. 양심에 따른 신념들과 이를 표명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은 특정 제도만을 실행하여야만 강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보편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 2005년 7월과 2006년 9월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따르면 각각 72.3%와 60.5%의 응답자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반대했다. 당사국은 이러한 제도를 공중의 합의 없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시기에 급히 도입하는 것은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긴장을 심화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4.7 당사국은 의무복무자들과 대체복무자들 간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실제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진술한다. 당사국 내 대다수의 군인들은 어려운 환경 하에서 의무를 다하는 중이며, 일부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동안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6월 19일 서해 연평도 부근에 벌어진 남북 함정 간의 충돌에선 여섯 명이 죽고 열아홉 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므로 병역 이행자의 부담과 대체복무 이행자의 부담 사이에서 형평성을 확보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균형이 계속 존재할 것이라 가정할 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전에 우선 일반 공중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일이 불가결하다.

4.8 당사국은 1990년 4월 10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수락했을 당시 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동 규약 제18조의 영역 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위원회는 1993년 7월 30일에야 일반논평 22를 통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불인정은 이 조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당사국은 당사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가 대체복무제를 현 시점에서 도입하지 않는 것이 규약의 침해로서 해석될 수 없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병역법의 필수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내린 판결을 언급한다.

4.9 당사국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를 연구할 정부 및 민간 합동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위원회에 알려졌다. 이 위원회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미래의 국방 인력 수요 및 공급의 전망과 병역거부자들의 진술문, 관련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의 의견 및 타국의 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위원회는 현재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민 여론의 동향을 추적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 중에 있다.

4.10 뿐만 아니라 2007년 9월 당사국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종교적 사유에 따른 징집 거부자들을 사회복무에 편입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사국은 국민 여론과 관계 부처 및 기구들의 입장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서 그런 합의가 존재한다고 확인될 시에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위원회에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당사국은 여기에 소개된 주장들에 의거하여 이 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재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당사국의 견해에 대한 청원인들의 반박

5.1 청원인들은 2008년 11월 14일자 서면으로 당사국의 주장에 반박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당사국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원인들은 분단 및 휴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게 있어서 안보가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독일은 통일 전인 1960년대부터 대체 복무를 시행해왔으며, 대만 역시 중국에 의해 점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복무를 시행하고 있다.

5.2 청원인들은 공식 통계에 따르면 34만명의 남성이 당사국의 병적에 편입되어있고, 8천명이 주로 신체 장애의 사유로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징집대상자 중 27만명의 병사들이 군대 병영에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7만명은 관공서, 경찰서, 소방서, 공공 건강센터, 검찰, 국방 관련 공장 및 실험실에서 “사회적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징집대상자들의 복무를 구분하는 기준은 신체 상태 혹은 기술과 자격 요건, 학력 등에 있어 이런 기준들이 군복무제도의 대안으로 이용될 수 있다. 대체 복무를 수행 중인 이들의 숫자가 높다는 사실은 당사국이 군대 병영에서 근무할 병사들이 결코 부족하지 않음을 드러낸다. 추가적으로 2006년 11월 4일 국방부에 의해 발행된 “국방 백서”에 따르면 당사국이 국가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2577명의 사병들을 외국으로 파견하였다고 한다.

5.3 청원인들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매년 700명 미만으로, 군대 병영 내부에서 근무하는 병사 수의 0.26%, 병영 외부에서 근무하는 병사 수의 1%를 차지한다고 한다. 따라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은 불합리하며 근거가 없다. 청원인들은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과 관련된 주장에 반박하여 당사국의 인구가 북한의 인구의 약 2배 이상이며 경제 규모는 3배 가까이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북한은 계속적인 인공위

성 감시 하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당사국의 방위 예산이 2006년의 경우 157억 달러였던 반면에 북한의 경우 같은 해 29.4억 달러 (추정치)였다는 사실과 당사국이 점차적으로 병역 의무 기간을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국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5.4 강제군복무제도 하에서 징병 기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는 정책이 필연적이라는 당사국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원인들은 병역거부자의 수보다 100배 이상 되는 7만명의 사람들이 군대 병영 외부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병역 의무의 불평등성에 대하여 염려할 이유가 없다. 청원인들은 또한 2007년 9월 18일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당사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다음의 조건 하에 “사회적 대체 복무”의 일부인 특별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계획을 말한다. 1) 복무는 계속적으로 집중 간호를 필요로 하는 알츠하이머 환자나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장 고난 이도의 “사회적 대체 복무”여야 하며, 2) 이러한 복무 종류를 수행하는 자는 집으로부터의 출근 대신에 명시된 시설에 남아있어야만 하고, 3) 복무 기간은 군대 병영에서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복무 기간의 2배가 되어야만 한다. 청원인들에 따르면, 위와 같은 대체복무의 조건들이(일반 군복 무에 비해) 더욱 도전적이고 많은 노력들을 요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만이 대체복무에 지원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군사 시스템에 역효과를 가져오거나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독일과 대만 모두에서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5.5 이 문제에 대한 ‘공중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대해, 청원인들은 당사국이 2005년과 2006년에 실시된 여론조사들의 통계만을 참조할 뿐, 위와 같은 특별한 대체복무 제에 다수가 찬성한(52%) 2007년의 여론조사 결과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수치는 종전 정부에 의해 인용되었고, 위의 4.10에서 제시된 것처럼 진보적 정당(열린우리당)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특별 대체복무제를 추가하기 위한 배경 논리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 있어, 정부는 윤여범과 최명진 대 대한민국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들에 의해 고무되었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결정을 바꾸었고, 자신의 새로운 의견을 지지해주는 이전의 여론조사들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2008년, 보수정당(한나라당)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국방부는 확대된 특별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5.6 청원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당사국이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통합과 다원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자신들의 범죄 기록으로 인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경제적 불이익들은 물론이고 사회적 불이익들을 받는다. 예를 들어, 그들은 공무원들로 임명되거나 개인 회사들에 입사할 자격이 없다.

5.7 청원인들은, 윤여범과 최명진 대 대한민국 사건에 대한 결정에 나타난 것처럼, 당사국은 규약 제18조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할 의무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대체복무의 다양한 형태들은 이미 존재하므로, 당사국은 단지 4주간의 군사훈련을 없앴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시행할 수 있다. 청원인들은 또한, 국제규약 제18조는 비상사태 시기동안조차 훼손될 수 없는 권리라는 사실, 따라서 국가 안보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언급한다.

위원회의 심의 쟁점과 진행 절차

심리적격의 심의

6.1 본건 청원에 포함된 주장을 심의하기 전에,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절차규칙 제93조에 따라 본건 청원이 자유권규약의 선택의정서에 따른 심리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2 이 사건 통보의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당사국은 반대한 바가 없고, 그밖에 달리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통보가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인권규약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통보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다.

본안의 심의

7.1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본건 청원을 심의하였다.

7.2 위원회는, 강제군복무에 대한 대체복무가 당사국에 부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청원인들이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들에 대한 범죄기소와 투옥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원인들의 주장을 확인한다. 위원회는 청원인들에 대한 유죄판결과 선고가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들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당사국을 상대로 제기된 유사한 사건들에서 위원회가 종전에 결정한 법리와 종전 사건들에서 당사국이 위와 같은 제한이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에서⁴⁾ 필요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했음을 상기한다.

7.3 위원회는 본건에서, 당사국이 위원회의 이전 청원들⁵⁾에 대한 응답으로 제기하였던 주장들, 특히 국가 안보,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부재에 관한 주장들을 되풀이했음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이전의 결정⁶⁾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이미 심리하였고, 따라서 이전의 입장을 바꿀 어떠한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7.4 위원회는, 강제군복무를 위한 징병을 청원인들이 거부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고 진정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었음)의 직접적인 표현이었고, 그후 청원인들에 대한 유죄판결과 선고는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들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할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본건에서, 당사국이 문제의 제한이 자유권규약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동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한다.

8.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인정된 위 사실들이 대한민국의 각 청원인들에 대하여 동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사실을 보여준다고 결정한다.

4) 윤여범과 최명진 대 대한민국 사건, 통보번호 1321/2004와 1322/2004, 2006년 11월 3일 자유권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결정.

5) Ibid.

6) Ibid.

9. 동 규약 제2조 제3(a)항에 따라, 당사국은 청원인들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향후 동 규약에 대한 유사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

10. 대한민국은 동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위 규약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승인했고, 위 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 영토 안에서 당사국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에게 위 규약이 인정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위 규약을 위반한 사건에서 유효하면 서도 이행 가능한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대한민국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위원회가 내린 본건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를 바란다. 또한 대한민국은 위원회의 본건 결정을 공표할 것이 요청된다.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채택하였으며 원본은 영어임. 또한 추후에 유엔총회에 대한 연차 보고서의 일부로 아랍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도 발행할 것임.]